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의안 번호	26399
----------	-------

제안연월일 : 2024. 1.

제안자 : 정무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21년 3월 31일 김병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21. 6. 22.)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2021년 6월 25일 홍성국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2021. 8. 30.)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다.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3. 6. 27.)에서는 위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라.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정무위원회(2023. 11. 30.)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식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여 광범위한 개인투자자 유인이 가능해지면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의 증가, 허위·과장광고 및 무자격자의 자문·일임에 따른 투자자의 금전적 피해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투자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하여 유료 회원제로 영업할 수 있는 자를 ‘투자자문업자’에 포함함(안 제7조제3항 및 제101조제1항).

나. 임원을 변경한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보고의무 근거를 마련함(안 제101조제2항).

다.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선고 말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말소에 책임 있는 임원 등에 대해서

도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1조제5항).

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1조제9항).

마. 금융투자업자의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금지를 유사투자자문업자에도 준용하고,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표시 또는 광고, 수익률 허위 표시 또는 광고 및 미실현 수익률 표시 또는 광고 등을 금지하며,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와 투자자 유의사항을 표시 또는 광고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101조의2 및 제101조의3 신설).

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거나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46조제17호의3 신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개별성 없는 조언(개별 투자자를 상정하지 않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에 관한 조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전단의 조언과 관련하여 온라인 상에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 고객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조제1항 중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를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행하는”으로, “조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개별성 없는 조언을 하는”으로, “이 조에서”를 “이 조 및 제101조의2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자(이하 이 조, 제101조의2 및 제101조의3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대표자를”을 “대표자 또는 임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이 법이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을 “이 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또는 소비자 보호 관련”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자”를 “자(법인인 경우 말소에 책임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0항 전단 중 “제9항제1호의”를 “제9항제1호 또는 제1호의2의”로, “정보제공을”을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시정조치 이행여부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세무서장은”을 “세무서장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으로, “여부에”를 “여부 또는 시정조치 이행여부에”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제1호 및 제2호 중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를 각각 “유사투자자문업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
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
하지 아니한 자

2. 이 조, 제101조의2, 제101조의3, 제173조의2제1항, 제178조의2, 제
180조 또는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4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
내에 위 규정 중 어느 하나를 다시 위반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받은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포함한다)

3.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101조의2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4.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101조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2편 제4장 제2절 제3관에 제101조의2 및 제10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1조의2(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 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는 제55조 및 제98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 및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로,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은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본다.

②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
2.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
3. 수익률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표시 또는 광고
4.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이 다른 유사투자자문업자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표시 또는 광고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 또는 광고

제101조의3(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수사항)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그 업무나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 그 표시 또는 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별적인 투자 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사항
2.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항
3.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사항

제444조제8호 중 “제101조제4항”을 “제101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445조제10호 중 “제42조제10항 또는 제52조제6항”을 “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또는 제101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446조에 제1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제449조제1항에 제3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의3. 제101조의2제2항 또는 제101조의3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사투자자문업 신고의 직권말소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9항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사투자자문업 신고의 직권말소에 관한 특례) 제101조제9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태료 및 과징금의 부과 횟수는 이 법 시행 이후 부과받은 과태료 및 과징금 처분부터 합산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제101조제2항 또는 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3회 미만 받았던 경우에는 이를 1회 받은 것으로 보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횟수에 합산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개별 금융 소비자를 상정하지 않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언을 하는 것. 다만, 전단의 조언과 관련하여 온라인상에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 고객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① · ② (생략) ③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조언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 ⑥ (생략) 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업(이하 이 조에서 “유사투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개별성 없는 조언(개별 투자자를 상정하지 않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에 관한 조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전단의 조언과 관련하여 온라인 상에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 고객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①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행하는-- ----- ----- ----개별성 없는 조언을 하는--

자자문업”이라 한다)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주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③ (생략)

④ 제98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에게 준용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 법이나 「유사수신행위의

이 조 및 제101조의2에서

② 자(이하 이 조, 제101조의2 및 제101조의3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라 한다)

1. 2. (현행과 같음)

3. 대표자 또는 임원을

③ (현행과 같음)

<삭제>

⑤

1. 이 법, 「유사수신행위의 규

규제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임원을 포함한다)

2. 3. (생략)

4. 제9항에 따라 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생략)

⑥ ~ ⑧ (생략)

⑨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1. (생략)

<신설>

제에 관한 법률」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또는 소비자 보호 관련-----

2. 3. (현행과 같음)

4. -----
-----자
(법인인 경우 말소에 책임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

5. (현행과 같음)

⑥ ~ ⑧ (현행과 같음)

⑨ -----

-----.

1. (현행과 같음)

1의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2. 제2항 또는 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제449조에 따른 과태료를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은 자

3. (생략)

⑩ 금융위원회는 제9항제1호의 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이 조, 제101조의2, 제101조의3, 제173조의2제1항, 제178조의2, 제180조 또는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4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위 규정 중 어느 하나를 다시 위반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받은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포함한다)

3. (현행과 같음)

⑩ -----제9항제1호 또는 제1호의2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시정 조치 이행여부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
-----세무서장

⑪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고, 검사에 관하여는 제419조를 준용한다.

1.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3항 후단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신 설>

<신 설>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여부 또는 시
정조치 이행여부에-----

⑪ -----

-----.

1. 유사투자자문업자-----

2. 유사투자자문업자-----

3.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101조
의2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
의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4.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101조
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
한 경우

<신 설>

제101조의2(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 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는 제55조 및 제98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 및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로,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은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본다.

②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
2.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
3. 수익률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표시 또는 광고
4.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금융투자

<신 설>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	<u>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이 다른 유사투자자문업자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표시 또는 광고</u> 5. <u>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 또는 광고</u> 제101조의3(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수사항) <u>유사투자자문업자는 그 업무나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 그 표시 또는 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u> 1. <u>개별적인 투자 상담과 자금 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사항</u> 2. <u>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항</u> 3. <u>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사항</u> 제444조(벌칙) ----- -----
---	---

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7. (생 략)

8. 제71조(제7호를 제외한다),
제85조(제8호를 제외한다),
제98조제1항(제101조제4항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
다)·제2항(제10호를 제외하
다) 또는 제108조(제9호를 제
외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8의2. ~ 29. (생 략)

제4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9. (생 략)

10. 제55조(제42조제10항 또는
제52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
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1. ~ 48. (생 략)

제4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

1. ~ 7. (현행과 같음)

8. -----

-----제101조의2제1
항-----

8의2. ~ 29. (현행과 같음)

제445조(벌칙) -----

-----.

1. ~ 9. (현행과 같음)

10. -----(제42조제10항, 제
52조제6항 또는 제101조의2
제1항-----

11. ~ 48. (현행과 같음)

제446조(벌칙) -----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7의2. (생략) <u><신설></u> 18. ~ 63. (생략)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4의2. (생략) <u><신설></u> 35. ~ 49. (생략) ② ~ ④ (생략)	----- ----- -----. 1. ~ 17의2. (현행과 같음) <u>17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u> 18. ~ 63. (현행과 같음) 제449조(과태료) ① ----- ----- -----. 1. ~ 34의2. (현행과 같음) <u>34의3. 제101조의2제2항 또는 제101조의3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u> 35. ~ 49.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